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8
----------	------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사회적 변화와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정비 및 운영체계 현행화로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현황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청소년시설 이용방법 및 운영시간 등 현행화(안 제6조~제7조)

1) 06:00~22:00 → 09:00~22:00으로 운영시간 변경

다. 청소년시설 사용료 현행화(안 제8조 및 별표 2, 별표 3)

1)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등 기준 정비

2) 수급자 청소년 등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3) 각 반환사유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 규정

라.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정(안 제12조)

1)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위원 자격 구체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7. 9. ~ 2020. 7. 29.)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06:00~22:00”을 “09:00~22:00”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

용료 또는 강습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사용료 등과”를 “사용료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2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동청년과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직 위원(2명) : 청소년복지”를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1길 18	방과후 프로그램, 진로체험, 동아리,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상담 및 보호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성동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독서실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 상한	비고
청소년 사업	청소년 (가족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체험형)	초·중·고 청소년	1회 10,000원	진로체험 센터
독서실	청소년	1회 500원	초·중·고
	성인	1회 1,000원	
상담	청소년	1회 5,000원	
	성인	1회 10,000원	
심리치료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심리검사	청소년, 성인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최고 1회 30,000원 종합심리검사 130,000원	
시설대관	강당	1회 기본 3시간 250,000원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동아리실 등	1회 기본 2시간 30,000원	
비고	<p>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p> <p>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p>		

[별표 3]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u>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이하 “<u>청소년시설</u>”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u>-----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청소년시설</u>이란 「<u>청소년기본법</u>」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청소년시설</u>”이란 「<u>청소년 기본법</u>」-- ----- ----- ----- -----.</p>
<p>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생략) <u>&lt;신 설&gt;</u></p>	<p>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u></p>
<p>제5조(운영의 원칙) ① <u>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u> 한</p>	<p>제5조(운영의 원칙) ① <u>구청장</u>---</p>

다.

②·③ (생략)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헬스장, 독서실, 그 밖의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이용시간) -----  
----- 09:00~22:00 -----  
----- 운영프로그램 등 -----  
----- .

제8조(사용료) ① -----  
-----  
----- 사용료 -----  
-----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신 설>

②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위탁신청) 청소년시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와 -----  
-----  
-----  
-----  
-----  
-----.

제10조(운영위탁신청) -----

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 5. (생략)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1. 당연직 위원(2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동청년과장
2. 위촉직 위원(2명) : 청소년복지 전문가

<신설>

-----  
 -----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3. 복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신 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④ (생 략)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  
-----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팀장-----.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1길 18	도시대여, 독서실, 헬스장, 유스택, 동아리방,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금호 청소년 독서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	독 서 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	---	---
---	---	방과후 프로그램, 진로체험, 동아리,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성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상담 및 보호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성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독서실 (1회 입실)	헬스장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개월	2개월	3개월
어린이		25,000	60,000	100,000	180,000			
청소년	500원	30,000	70,000	120,000	200,000	30,000	60,000	75,000
성인		40,000	100,000	170,000	300,000			

1. 이용료는 표준액이며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음  
(강습 프로그램 주2회 수강 기준)  
2.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3. 모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함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료 상한	비고
청소년 사업 (가족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체험형)	초·중·고 청소년 1회 10,000원	진로체험 센터
독서실	청소년 1회 500원 성인 1회 1,000원	초·중·고
상담	청소년 1회 5,000원 성인 1회 10,000원	
심리치료	청소년, 성인 1회 30,000원	
심리검사	청소년, 성인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최고 1회 30,000원 종합심리검사 130,000원	
시설대관	강당 1회 기본 3시간 250,000원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동아리실 등 1회 기본 2시간 30,000원	
비고	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신 설>

[별지서식]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제10조 관련)				
법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신 설>

[별표 3]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학원운영 및 평생교육시설운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제10조 관련)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삭 제>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제8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기간		. . . ~ . . .	사용기간 . . . ~ . . .
반환청구	취소사유		
	반환액	일금 원정(₩ )	
	반환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서식 정비, 실제 청소년시설 이용현황 반영 등 단순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 아동청년과 사회7급 이지연 (02-2286-5484)

## < 관 계 법 규 >

###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 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생략)

##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